

**노인 범죄 피해 추이 분석과 대책:
공식범죄통계를 중심으로**

**노인 범죄 피해 추이 분석과 대책:
공식범죄통계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소 생활안전대책연구실

책임연구원 유지웅

- 차례 -

I. 서론	1
1. 문제의식	1
2. 연구목적과 연구자료	2
II. 노인의 개념과 기존 연구동향	5
1. 노인의 개념	5
2. 노인 범죄피해 연구 동향	7
III. 노인 범죄피해 추이 분석(1999~2008년)	9
1. 전체 노인 범죄피해 추이	10
2. 노인 형법범죄 피해 추이	13
3. 형법범죄 유형별 노인 범죄피해 추이	15
4. 노인 재산범죄 피해 추이	19
5. 노인 절도·사기범죄 피해 추이	22
6. 요약	28
IV. 노인 범죄피해 예방대책 제언	30
1. 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0
2. 노인 소비자 지원 민간 네트워크와 협력관계 구축	32
3. 범죄 피해 신고율 제고 노력	32
4. 노인 사기범죄 피해 관련 법률안 개정	33
V. 결론	34

<참고문헌>	36
--------	----

<표 차례>

<표 1> 지난 10년 동안(1999-2008년) 노인 범죄피해자 발생 추이	10
<표 2> 노인형법 범죄 피해 발생 추이	13
<표 3> 형법범죄 유형별 노인피해자 추이	16
<표 4> 노인 재산범죄 피해 발생 추이	19
<표 5> 재산범죄 유형별 노인피해자 발생 추이 (단위: 명, %)	21
<표 6> 절도범죄 노인 피해자 발생 추이	23
<표 7> 사기범죄 노인피해자 발생 추이	25

<그림 차례>

<그림 1> 1999-2008년 인구 10만명당 범죄피해자수 추이	12
<그림 2> 연도별 여성 노인 피해자 발생 추이	13
<그림 3> 형법범죄 유형별 노인피해자 발생빈도 비교	18
<그림 4>인구 10만명당 각 형법범죄 유형별 범죄피해자 발생 추이	18
<그림 5> 인구 10만명당 재산범죄 노인피해자 발생 추이	20
<그림 6> 절도·사기·기타범죄 노인피해자 비율	22
<그림 7> 인구 대비 성별 절도범죄 피해자수 추이	24
<그림 8> 인구대비 성별 사기범죄 노인 피해자 발생 추이	27

I .서론

1. 문제의식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7.2%를 넘어서므로써 ‘고령화 사회’ (aging society)에 들어섰다. 2019년에는 노인인구가 14.4%를 넘어서 ‘고령사회’ (aged society)에 들어서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¹⁾ 노인인구의 증가는 여러 가지 형태의 노인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자녀들과 떨어져 홀로 거주하는 노인들, 절대 빈곤의 상태에 놓여 있는 가난한 노인들,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노인들의 문제는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대체로 노인들의 복지수준을 높이는 데 역점이 두어지고 있다. 그러한 노력에는 노후의 삶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범죄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한다.

노인에 관한 범죄학자들의 관심은 크게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에 기초해 있다. 그 하나는 범죄의 피해대상으로서 존재해 온 노인에 대한 오래된 관심이고, 다른 하나는 가해자로서 등장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비교적 최근의 관심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노인의 범죄, 혹은 범죄피해에 관한 관심은 최근 노인범죄와 범죄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범죄통계자료에 기초해 있다.

노인 범죄 혹은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는 범죄발생 실태에 관한 기초적 조사 연구를 요구한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노인에 의한 범죄와 노인에 대한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1)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결과, 2002.

이 연구는 최근 우리 사회의 노인 범죄피해 발생 추이를 공식통계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하려는 노력이다. 공식범죄통계가 갖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의 범죄피해 발생 추이 분석을 통해 노인 범죄피해의 흐름과 변화를 살피고자 한다.

2. 연구목적과 연구자료

이 연구는 지난 10년 동안의 전체 형법 범죄피해 추이 속에서 노인 범죄피해 추이를 비교 분석하고, 주요 범죄피해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찰 차원에서의 노인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시사점과 대책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제2장에서는 노인 범죄피해를 주제로 한 주요 조사연구와 논문들을 검토하였으며, 본론적으로 제3장에서는 공식범죄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 범죄피해 발생 추이를 분석, 노인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 제4장에서는 노인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성과를 검토하고 노인 범죄피해 현상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문헌 조사를 하고, 공식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노인 범죄피해 발생 추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공식범죄통계 자료로서 대검찰청에서 발행하는 『범죄분석』(1999년~2009년)을 이용하였다.

공식범죄통계(official crime statistics)는 국가기관에서 범죄의 발생과 처리 상황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집계한 통계이다.²⁾ 공식범죄통계는 일정한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정기적으로 집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 발생 상황을 분석하는 데 기초적 자료가 되고 있다.³⁾

2) 공식범죄통계를 집계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 등이 있다.

3) 광대경 외, 현대사회와 범죄, 청목출판사, 2007, 66면.

우리나라의 공식범죄통계로서 경찰청에서 발행하는 범죄분석⁴⁾, 대검찰청에서 발행하는 범죄분석⁵⁾, 사법연감, 범죄백서 등이 있다.⁶⁾

공식범죄통계는 대표성과 공신력이 높은 통계자료이다. 그러나 범죄현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공식범죄통계는 그 자체의 한계를 안고 있기도 하다.

첫째로, 공식범죄통계는 암수범죄를 반영하지 못한다. 공식범죄통계는 형사사법기관에서 범죄사건을 수사하면서 작성한 범죄통계를 토대로 작성된다. 여기에서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신고에 크게 의존한다. 문제는 범죄 피해를 입고서도 형사사법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⁷⁾범죄피해가 심각하지 않다고 여기거나, 범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여기거나, 보복이 예상되거나, 수사기관에 출입하는 것이 번거롭게 여겨질 때, 범죄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형사사법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형사사법기관에 인식되지 않는 범죄, 곧 암수범죄는 모두 공식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는다.

둘째로, 공식범죄통계는 형사사법기관의 범죄 단속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형사사법기관이 범죄 특별단속기간을 정하여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치면 그 기간의 범죄발생건수는 증가한다. 특별 음주단속 기간에 음주운전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이다. 이렇듯 공식

4) 경찰청에서 발행하는 『범죄분석』(2007년부터 『범죄통계』로 명칭 변경)은 경찰에서 연간 처리한 범죄사건을 집계 분석한 것이다. 전국의 경찰서에서 취급한 범죄사건의 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 등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종합하여 집계한 것이다.

5) 대검찰청에서 발행하는 『범죄분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식범죄통계이다. 이 『범죄분석』은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산립청, 항만청, 관세청)에서 범죄사건을 수사하면서 작성하거나 전산 입력한 3종의 범죄통계를 토대로 작성된다. 이 통계에는 범죄의 발생과 검거현황, 범죄 발생의 시간과 발생장소 등의 일반적 범죄분석, 범죄자 처분결과, 여성이나 전과자 등의 범죄자별 범죄분석 등이 수록되어 있다.

6) 그밖에도 공식범죄통계에는 검찰연감, 비행소년통계, 청소년백서 등이 있다(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제8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199면).

7) 200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범죄 피해 자료를 수집했을 때, 절도 피해를 당한 조사대상자 중에서 범죄 신고를 한 비율은 20.0%, 강도의 경우는 12.5%, 폭행과 상해의 경우는 14.3%, 성폭력의 경우는 6.3%에 불과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V), 2006, 63면).

범죄통계는 실제 그 사회의 범죄발생 실태와 다르게 형사사법기관의 단속의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⁸⁾

공식범죄통계가 갖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범죄피해자료(Crime victimization data)가 이용된다. 범죄피해자료는 조사대상자에게 범죄 피해 경험이 있는지를 묻고 그 응답을 통해 수집한 범죄자료이다. 범죄피해자료는 범죄피해를 입은 조사대상자가 자신의 피해 경험을 밝힘으로써 얻어진 범죄자료이다. 범죄피해자료는 범죄피해를 당하고서도 신고하지 않아 누락된 암수범죄의 규모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최근 범죄현상 연구에서 범죄피해자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범죄피해자료가 갖는 이러한 장점 때문이다.⁹⁾

공식범죄통계과 범죄피해자료는 서로 장단점을 갖고 있는 범죄자료로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범죄현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이 두 가지 자료가 모두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식범죄통계를 보완하는 수준에서의 범죄피해자료를 확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의 범죄피해조사(NCS:National Crime Survey)의 경우 표본크기는 65,000가구의 160,000명이다.¹⁰⁾ 이러한 규모 정도의 피해조사가 이뤄져야 비로소 공식범죄통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의 범죄피해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1994년부터 전국규모로 실시해온 바 있다.¹¹⁾ 그러나 이 조사는 몇몇의 범죄유형에 제한되어 있으며, 표본수가

8) 그밖에도 공식범죄통계는 범죄를 수집하고 집계하는 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이 지적된다. 범죄를 정의 및 분류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의 재량과 판단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식범죄통계는 정부 정책 및 법의 제정과 개정으로 인한 범죄통계 집계방식의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9) 범죄피해자료를 통해서 범죄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우선은 조사표 항목을 법률적 범죄구분에 일치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범죄실태를 파악하고 암수범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료와 공식범죄통계자료의 범죄구분이 일치해야 하는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료에서 공식범죄통계에서와 같은 세분화된 범죄구분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기억의 한계로 범죄피해경험이 제대로 기억되지 않아 잘못된 응답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10) 광대경 외, 현대사회와 범죄, 청목출판사, 2007, 95면.

2,000명 수준으로서 우리 사회의 전체 범죄 수준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¹²⁾

이 연구에서의 노인 범죄피해 추이 분석은 공식 범죄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공식범죄통계에만 의존하는 연구가 갖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연구기간과 지면의 한계로 범죄피해조사가 병행되지 못한 것은 이 연구의 한계이다.

II. 노인의 개념과 기존 연구동향

1. 노인의 개념

노인의 범죄피해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할 때에 먼저는 과연 노인은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부터 해야 할 것이다. 노인의 정의에 대한 학자들의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1951년 제2회 국제노년학회에서 취한 노인의 정의를 기초하고 있다. 이 학회에서는 “인간의 노령화 과정에 나타나는 생리적·심리적·환경적 변화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을 노인이라고 정의한다.¹³⁾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11) 최인섭·박순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최인섭·기광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박순진·최영신,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장준오, 세계범죄피해조사:한국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최인섭·김지선·황지태,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김지선·박미숙·김지영·홍영오,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김은경·최수형·박정선,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12) 광대경 외, 현대사회와 범죄, 청목출판사, 2007, 77면.

13) 김인숙, “노인범죄에 관한 이론”, 사회과학연구, 11, 국민대학교, 1998, 345-359면.

면, 노인은 첫째,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생체의 조직기능이 감퇴하고 있는 사람; 둘째, 생체의 자체 통합능력이 감퇴하고 있는 사람; 셋째, 생체의 전반적인 기관·조직·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시기에 있는 사람; 넷째, 생체 조직의 예비능력이 감퇴함으로써 적응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규정된다.¹⁴⁾ 이러한 개념정의에 따라 간단히 말하면, 노인은 노화의 일정한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마다 노화의 정도가 다르며, 스스로 노인이라고 규정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노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비어징(K. Wirsing)은 나이에 대한 이해를 크게 세 가지 나이, 즉 달력상의 나이, 사회적 나이¹⁵⁾, 기능적 나이¹⁶⁾로 나눠서 설명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노인은 일정한 나이에 이른 연령층을 지칭한다. 서구에서는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노인으로 간주한다.¹⁷⁾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만 60세가 되는 해인 회갑의 영향으로 60세를 노인 연령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왔지만,¹⁸⁾ 최근에는 60세보다는 65세

14) 김근홍, 한·독 노인복지 이해, 학문사, 1999.

15) 사회적 나이(social age)란 어떤 특정 나이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관심이나 기대를 고려한 나이이다. 사회적 나이로 볼 때 노인은 주요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사회적으로 퇴직하였거나 가정에서 주부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이양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러한 이러한 정의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분명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특히 여성)에게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16) 기능적 나이란 개인의 특수한 신체적·심리적 영역에 있어서의 기능의 정도에 의해서 규정하는 것이다. 기능적 연령에 의한 노인은 노화로 인한 다른 능력의 감퇴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수한 신체적·심리적 및 사회적 영역에 있어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개인의 특수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노인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정의는 개인 및 개인간의 노화의 특성이 다름을 감안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판단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편의성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17)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65세 한계연령은 1889년 6월 22일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제정된 “양로 및 퇴직보험” 과 관련된 법 조항에서 유래하고 있다. 문제는 그 당시 설정된 65세 한계연령이 독일 노인들의 제반 특성을 고려하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철의 재상 비스마르크의 다분히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된 것이어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김근홍, “노인문제와 노년학”, 김근홍 외, 한국의 사회문제, 도서출판 양지, 2002, 289면).

를 노인으로 보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¹⁹⁾

일반적으로 노인은 육체적으로 노화현상을 겪는 나이, 사회적으로는 경제활동 현장에서 은퇴하는 나이인 60세 혹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노인 관련 법규에서도 일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노인을 정의하는데, 나라별로 그 기준이 다르며, 한 나라 내에서도 노인 관련 법규의 성격에 따라서 나이의 기준이 다르다.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법에서는 정년퇴직 연령은 65세 이상, 사회보장 혜택은 62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공공주택보조금은 60세 이상, 직업훈련지원은 55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²⁰⁾ 우리나라에서도 「노동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이란 경로연금 수혜를 받을 수 있거나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연령으로 65세 이상의 사람을 지칭한다. 그렇지만 「국민연금법」은 가입대상자의 자격을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으로 정의함으로써 60세 이상의 연령을 노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으로 분류하는 연령기준은 각기 다르지만,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공식통계를 관리하는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노인의 연령을 60세로 보고 관련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만 60세 이상의 연령층을 가리켜 노인으로 정의한다.

2. 노인 범죄피해 연구 동향

범죄학 분야에서 노인과 범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미국의 경우 이 분야의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70년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²¹⁾ 미국에서 노인의 범죄나 범죄피해는 다른 연령

18) 김태현, 노인학, 교문사, 2007.

19) 정태인 외, 사회문제, 그린, 2008, 182면.

20) 허경미, 노인의 범죄피해 특징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 17호, 426면.

21) Letitia T. Alston, Crime and Older Americans, Charles C. Thomas Publishers, 1986, vi.

집단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노인과 범죄에 관한 논의는 범죄 혹은 범죄피해 그 자체에 두어지기 보다는 노인들이 느끼는 범죄피해의 두려움 혹은 피해에 대한 관심의 문제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다가 일본 등에서 노인범죄가 점차 증가하면서 노인에 의한 범죄, 그리고 노인범죄의 피해자가 대체로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노인들일 것이라는 점에서 노인들의 범죄피해 자체에 대해서도 관심이 두어지기 시작했다.

국내에서의 노인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건종·전영실의 “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1995)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65~1992년까지의 공식범죄통계를 이용하여 노인 범죄 및 범죄피해 추세를 분석하고 있으며, 약 200명의 노인범죄자에 대한 수사재판기록을 분석하여 노인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서울시에 60세 이상 노인 600명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 실태에 관한 실증적 조사를 행한 최초의 연구로서 의미를 갖는다.

허경미(2004)의 “노인의 범죄피해 특징 및 대책에 관한 연구”는 1995~2001년 기간 동안의 공식범죄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의 범죄피해 현황을 분석하고 범죄피해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허경미는 노인의 형법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사기와 절도범죄 피해가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상해와 폭행범죄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허경미(2006)의 다른 연구인 “도시노인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구지역에서 200여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재산피해와 폭력피해별로 범죄피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을 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노인 재산범죄 피해에는 범죄자와의 근접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폭력범죄 피해에서는 범죄대상자의 매력성도 부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되고 있다고 밝

히고, 이에 따른 노인 범죄피해 예방대책으로서 범죄자와 물리적 거리를 둘 수 있는 환경적 정화노력을 강조하고 있다.²²⁾

지난 2008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준오 외(2008)의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와 노인환경의 유해성 연구”는 지난 1995년의 이건종·전영실의 연구의 연장선에서 노인범죄와 범죄피해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조사 보고서로서, 특별히 이 연구에서는 노인 범죄피해 실태 파악을 위해서 다단계층화표집 방법에 기반한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 건종·전영실(1995)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 표집의 대표성 문제를 극복하고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즉, 이 연구에서는 노인범죄 피해 추세 분석을 위해서 공식범죄통계 분석과 함께 전국적 단위의 노인 범죄피해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서 노인범죄 피해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

이 연구는 최근 10년 동안의 공식범죄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의 범죄피해 발생 추이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공식범죄통계자료에 의존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조사방식을 통한 노인범죄피해 추세 확인을 거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안고 있으나, 최근의 노인범죄피해 발생추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공식범죄통계를 이용한 기존 연구결과를 보완하고 있다.

Ⅲ. 노인 범죄피해 추이 분석(1999~2008년)

국내에서 발생한 형법범죄와 특별법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범죄통계로서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이 있다. 이 통계에는 범죄유형별로 피해자의 성별 연령별 통계를 담고 있다. 이 장에

22) 허경미, 도시노인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2006, 294면.

서는 지난 10년 동안 60세 이상 노인 연령층의 범죄 피해 발생 추이를 범죄 유형별로 살핀다. 『범죄분석』 통계자료는 형사사법기관이 처리한 사건들을 단순집계한 것으로서, 각 범죄 유형별 발생 빈도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 자료들을 가공하여 인구 10만명당 범죄피해자 발생 건수, 성비, 노인비, 특정연도 기준 범죄피해 증가율 평균값 등을 산출함으로써 범죄피해 발생 추이를 분석한다.

1. 전체 노인 범죄피해 추이

<표 1> 지난 10년 동안(1999-2008년) 노인 범죄피해자 발생 추이

	피해자	인구대비 범죄피해 자*	노인피해 자(A)	인구대비 노인 범죄피해 자*	인구대비 노인비	여성노인 피해자(B)	성비(B/A)(%)
1999	675,353	1,449	34,643	750	51.8	11,303	32.6
2000	727,748	1,548	37,945	785	50.7	12,445	32.8
2001	733,164	1,548	42,888	851	55.0	12,620	29.4
2002	650,541	1,366	42,466	806	59.0	11,930	28.1
2003	744,243	1,555	45,156	820	52.8	13,474	29.8
2004	991,896	2,065	67,805	1,185	57.4	23,187	34.2
2005	983,214	2,042	76,176	1,287	63.0	28,779	37.8
2006	1,050,066	2,174	87,536	1,432	65.9	32,374	37.0
2007	1,122,607	2,317	95,178	1,505	65.0	33,993	35.7
2008	1,218,164	2,506	110,533	1,573	62.7	40,373	36.5
1999년 기준 증가율 평균**	31.7	28.1	84.8	46.6		95.0	

자료: 검찰청, 범죄분석(2000-2009).

* 인구10만명당 범죄피해자수

** 1999년을 기준으로 각 연도별 범죄피해자수 증가율 평균임. 산출식은 ((2000년 범죄피해자수-1999년 범죄피해자수)/1999년 범죄피해자수*100 + (2001년 범죄피해자수-1999년 범죄피해자수)/1999년 범죄피해자수*100 + ... (2008년 범죄피해자수-1999년

범죄피해자수)/1997년 범죄피해자수*100)/10

주1) 인구10만명당 범죄피해자 산출에 적용한 각 연도별 인구자료는 통계청 장래추계 인구 자료를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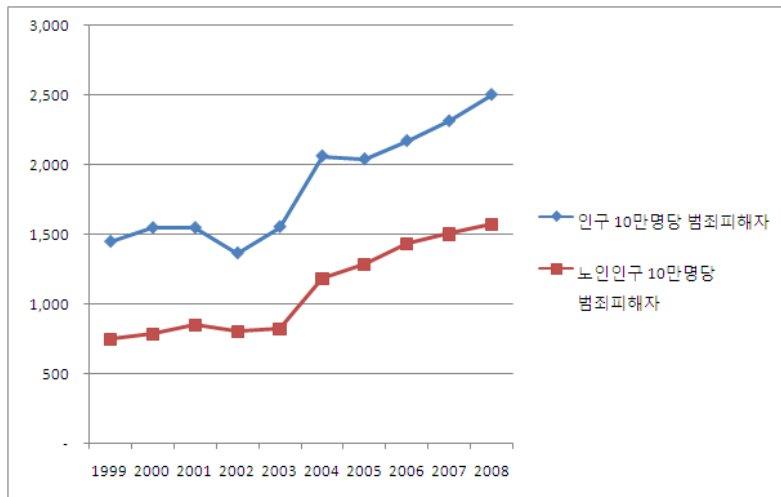
<표1>은 지난 10년 동안(1999-2008년) 전체 범죄 피해자와 노인피해자 발생 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이 표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범죄피해자 발생 추이를 보여주는데, 이 기간 동안 전체 범죄피해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1999년 전체 범죄피해자수는 모두 675,353명으로 집계되었는데, 2008년에는 1,218,164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전체 범죄피해자수는 1.8배 정도 증가했으며 1999년을 기준으로 범죄피해자 증가율 평균은 31.7%이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 범죄피해자가 증가추세를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노인범죄피해자도 꾸준히 증가했다. 1999년 노인범죄피해자는 34,643명으로 집계되었는데, 2008년에는 110,533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10년 동안 노인 범죄피해자수는 3.2배 증가했다. 1999년 기준 노인범죄피해자 증가율 평균은 84.8%에 이른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범죄피해자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61세 이상 노인 연령층의 범죄피해자는 더욱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범죄피해 발생 추이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인구규모의 변화에 따른 변수를 통제한 인구대비 범죄피해자수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구 10만명당 범죄피해자수를 산출하여 비교해 보면, 1999년에는 인구 10만명당 범죄피해자는 1,449명이던 것이 2008년에는 2,506명으로 1.72배 증가하였다. 1999년도 기준 증가율 평균은 28.1%이다. 이와 비교해서 인구 10만명당 노인 범죄피해자수는 1999년 750명에서 2008년 1,573명으로 2.1배 증가하였다. 1999년 기준 증가율 평균은 46.6%에 이른다. 지난 10년 동안 노인들의 범죄피해자 증가율은 전체 범죄피해자 증가율을 상회했다. 이러한 사실은 인구 10만명당 전체 범죄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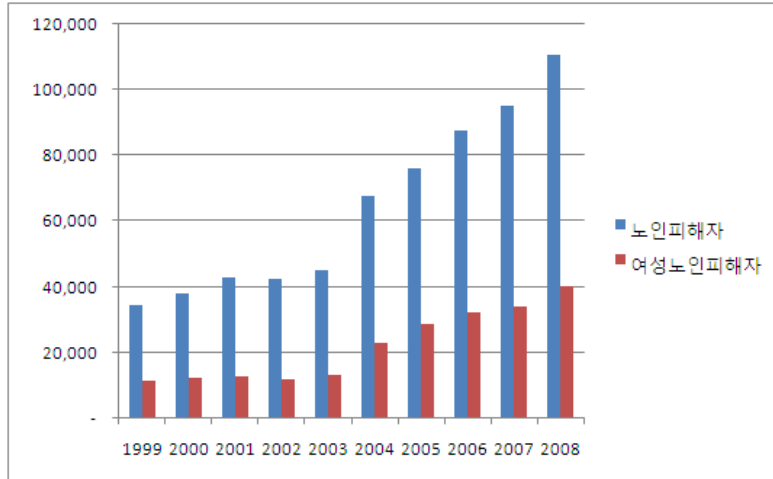
해자에서 노인범죄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인구10만명당 노인비)에서도 확인된다. 인구10만명당 노인비는 1999년 51.8% 수준이었는데, 2008년에는 62.7%로 높아졌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노인 범죄피해자는 전체 범죄피해자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말할 수 있다. 아래 <그림1>은 인구10만명당 범죄피해자 발생 추이를 노인 범죄피해자 발생 추이와 비교한 것이다.

<그림 1> 1999-2008년 인구 10만명당 범죄피해자수 추이



<표1>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노인 범죄피해자의 성비 추이를 보여준다. 이 기간 동안 노인 남성의 범죄 피해율은 줄곧 노인 여성보다 높다. 노인범죄피해자 가운데 여성노인범죄피해자의 비율(성비 B/A)은 1999년에 32.6%였는데 2008년에는 36.5%를 나타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노인 범죄피해자 10명 중 6~7명은 남성노인이었던 셈이다. 지난 10년 동안 노인 여성 범죄피해자 규모는 노인 남성의 28~37% 수준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를수록 점차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최근 들어 여성의 범죄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림 2> 연도별 여성 노인 피해자 발생 추이



2. 노인 형법범죄 피해 추이

<표 2> 노인형법 범죄 피해 발생 추이

	전체형법 범죄피해 자	인구대비 형법범죄 피해자*	형법범죄 피해노인(A)	인구대비 형법범죄 노인피해 자*	인구대비 노인비	여성노인 피해자(B)	성비(B/A)(%)
1999	251,042	539	13,690	296	55.0	3,929	28.7
2000	285,519	607	16,155	334	55.1	4,715	29.2
2001	295,628	624	17,107	340	54.4	4,994	29.2
2002	413,603	869	22,259	423	48.7	6,177	27.8
2003	485,438	1,014	25,265	459	45.3	7,719	30.6
2004	643,744	1,340	41,782	730	54.5	13,589	32.5
2005	665,162	1,382	46,340	783	56.6	14,943	32.2
2006	699,253	1,448	51,056	835	57.7	15,922	31.2
2007	753,244	1,554	55,635	880	56.6	17,351	31.2
2008	796,865	1,639	65,173	927	56.6	20,628	31.7
1999년 기준 증가율 평균	110.7	104.4	158.9	102.9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2000-2009)

* 인구10만명당 각 범죄피해자수임.

지난 10년 사이(1999~2008년) 국내에서 형법범죄 피해자는 3배 정도 증가하였다. 1999년 전체 형법범죄 피해자는 251,042명으로 집계되었는데, 2008년에는 796,865명으로 늘어났다. 1999년 기준 증가율 평균은 110.7%에 이른다. 연도별로 전체 형법범죄 피해자 발생빈도를 살펴볼 때, 해마다 범죄피해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별히 2002년과 2004년에 범죄피해자가 급증하였다. 이 시기에 형법범죄가 급증할 만한 외부 환경요인의 변화는 뚜렷하지 않다. 경기종합지수, 실업률, 경제성장률 등은 예년의 변화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단지 2004년에 각 검찰청에 범죄피해자지원과를 설립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확대한 것이 주목된다.²³⁾

지난 10년 동안 형법 범죄 피해를 입은 노인들의 숫자도 크게 늘어났다. 1999년 형법범죄 피해 노인은 13,690명이었는데, 2008년에는 65,173명으로 4.7배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전체 형법범죄 피해자수는 1999년 539명에서 2008년 1,639명으로 3.0배 증가하였으며, 인구 10만명당 형법범죄 노인피해자수는 1999년 296명에서 2008년 927명으로 3.1배 증가했다. 1999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형법범죄 피해자 증가율 평균은 104.4%이고 형법범죄 노인피해자 증가율 평균은 102.9%이다.

그러나 인구 10만명당 형법범죄 피해자에서 노인피해자의 비율(인구10만명당 노인비)은 55~58%에서 일정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전체 형법범죄 피해자에서 노인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중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02년과 2003년 두 해 동안 50% 이하로 낮아지기도 했지만, 2004년 이후에는 다시금 55% 수준을 나타내고 있

23) 장준오 외,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와 노인환경의 유해성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115면.

다. <표1>에서는 인구 10만명당 전체 범죄피해자에서 범죄피해 노인의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51.8%에서 62.7%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증가는 특별법 범죄에서의 노인피해자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형법범죄 노인 피해자의 성비, 즉 여성 노인피해자의 비율을 보면, 28~32% 정도의 수준을 나타낸다. 1999년 여성 노인피해자의 비율은 28.7%였는데, 2004년 32.5%까지 높아졌다가 2008년에는 31.7%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형법 범죄 노인 피해자에서 여성 노인의 비율은 30% 수준에서 큰 변동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3. 형법범죄 유형별 노인 범죄피해 추이

우리나라 공식 범죄통계에서 형법범죄는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기타 형법범죄로 구분되어 집계되고 있다. <표3>은 형법범죄 유형별로 지난 10년 동안 노인 범죄피해자 발생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표 3> 형법범죄 유형별 노인피해자 추이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기타형법범죄	계
1999	8,810	344	5,870	571	25	74	314	1,174	17,182
	51.3	2.0	34.2	3.3	0.1	0.4	1.8	6.8	100.0(%)
2000	10,469	376	6,714	610	33	106	475	1,370	20,153
	51.9	1.9	33.3	3.0	0.2	0.5	2.4	6.8	100.0(%)
2001	11,187	333	7,601	648	37	190	463	1,465	21,924
	51.0	1.5	34.7	3.0	0.2	0.9	2.1	6.7	100.0(%)
2002	11,983	381	7,055	595	37	182	478	1,548	22,259
	53.8	1.7	31.7	2.7	0.2	0.8	2.1	7.0	100.0(%)
2003	14,083	431	7,893	658	38	153	442	1,567	25,265
	55.7	1.7	31.2	2.6	0.2	0.6	1.7	6.2	100.0(%)
2004	24,844	643	11,181	1,413	72	129	587	2,913	41,782
	59.5	1.5	26.8	3.4	0.2	0.3	1.4	7.0	100.0(%)
2005	27,249	785	13,235	1,548	117	148	732	3,268	47,082
	57.9	1.7	28.1	3.3	0.2	0.3	1.6	6.9	100.0(%)
2006	30,740	822	12,824	1,643	119	260	781	3,757	50,946
	60.3	1.6	25.2	3.2	0.2	0.5	1.5	7.4	100.0(%)
2007	33,550	831	13,960	1,722	96	313	813	4,350	55,635
	60.3	1.5	25.1	3.1	0.2	0.6	1.5	7.8	100.0(%)
2008	40,952	1,033	15,297	1,818	130	266	809	4,868	65,173
	62.8	1.6	23.5	2.8	0.2	0.4	1.2	7.5	100.0(%)
1999년 기준 증가율 평균	142.7	73.8	73.1	96.6	181.6	146	87.7	123.8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2000-2009),

주1) 1999년부터 2001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구분은 2002년 이후 통계 기준에 따라 재분류함. 이 기간 동안 강력범죄(폭력) 항목에는 이후 통계 기준에 따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 피해자를 포함하여 가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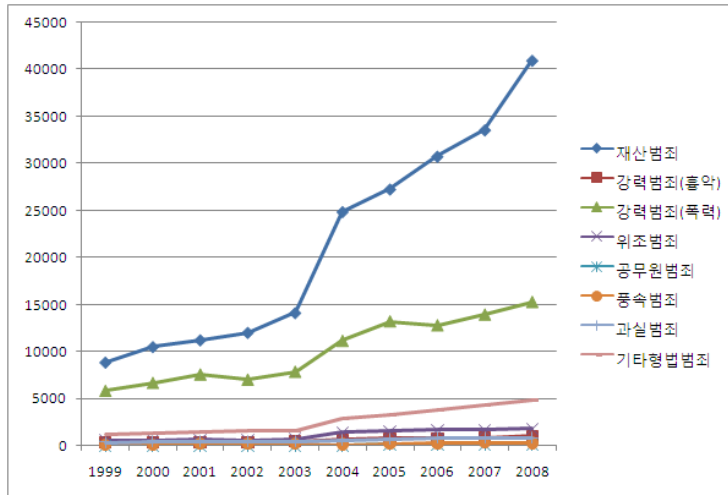
형법범죄 유형별로 볼 때, 노인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유형은 재산범죄이고, 그 다음은 강력범죄(폭력)이다. 2008년의 경우, 전체 노인 형법범죄 피해자 65,173명 가운데 재산범죄 피해자는 40,952명(62.8%), 강력범죄(폭력) 피해자는 15,297명(23.5%), 강력범죄(흉악) 피해자는 1,033명(1.6%) 등이다. 노인 형법범죄 피해의 대다수는 재산범죄와 강력범죄(폭력) 피해이다.

노인 재산범죄 피해는 범죄피해 발생 증가율에서도 눈에 띈다. 1999년 8,810명이던 노인피해자는 2008년에는 40,952명으로 10년 사이에 4.64배 증가했다. 1999년 기준 재산범죄피해 증가율 평균은 142.7%에 이른다. 한편, 노인 강력범죄(폭력) 피해는 1999년 5,870명에서 2008년 15,297명으로 2.6배 증가했으며, 강력범죄(흉악) 피해는 1999년 344명에서 2008년 1,033명으로 3.0배, 위조범죄 피해는 1999년 571명에서 2008년 1,818명으로 3.18배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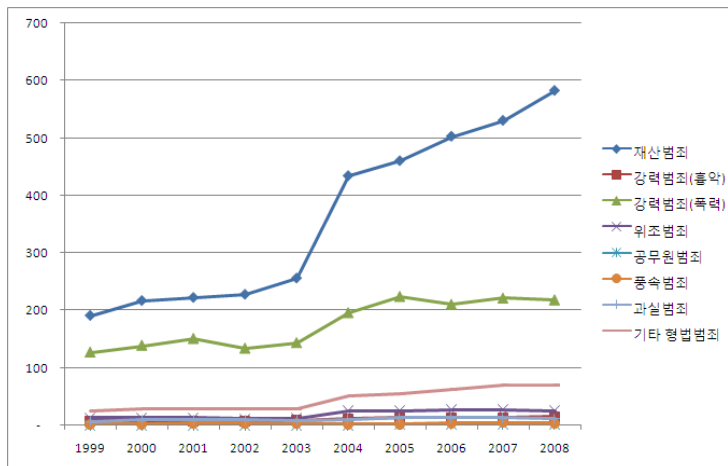
각 형법범죄 유형별 노인피해자가 전체 형법범죄 노인피해자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를 살펴볼 때에도 재산범죄 노인피해자의 증가는 드러난다. 1999년 노인 재산범죄 피해자는 8,810명으로서 전체 노인형법범죄 피해자 17,182명 가운데 51.3%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2003년에는 55.7%, 2006년에는 60.3%, 2008년에는 62.8%로 점점 그 구성비가 높아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강력범죄(폭력) 노인피해자가 전체 형법범죄 노인피해자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1999년 34.2%에서 2008년에는 23.%로 점점 감소하고 있다. 각 형법범죄 유형의 구성비는 상대적인 것으로서, 강력범죄(폭력) 노인피해자 발생빈도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재산범죄 노인피해자 발생빈도의 급증에 따라 상대적으로 강력범죄(폭력)의 구성비는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력범죄(폭력) 발생빈도의 증가를 해석하고자 할 때에는 노인인구의 증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4>는 노인인구의 증가요인을 고려하여 인구 10만명당 범죄피해자 추이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형법범죄 유형별 노인피해자 발생빈도 비교



<그림 4>인구 10만명당 각 형법범죄 유형별 범죄피해자 발생 추이



최근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증가요인을 고려하여 인구 10만명당 각 형법범죄 유형별 범죄 피해자 발생 추이를 산출해 보면, 각 범죄유형별 피해자 증가 추이는 조금 완만해진다. 재산범죄는 지난10년 동안 범죄피해

자 증가 추세가 여전히 확인하지만, 강력범죄(폭력)의 경우에는 지난 2005년 이후 정체 상태를 나타낸다. 지난 10년 동안 형법범죄 노인피해자의 증가는 사실상 재산범죄 피해자의 증가로 해석할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형법범죄 노인 피해자의 성별을 살펴볼 때, 전체 피해자의 70% 정도는 남성이다. 구체적으로 형법범죄 유형별로 살펴볼 때, 2008년 형법범죄 유형별 피해자에서 남성노인 피해자가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은 공무원범죄(86.2%)이고, 그 다음으로는 풍속범죄(75.6%), 재산범죄(69.21%), 위조범죄(69.20%) 순이다. 반면에 여성 노인은 강력범죄(흉악)피해자가 많은데, 2008년 여성 노인피해자 비율은 62.0%이다.

4. 노인 재산범죄 피해 추이

<표 4> 노인 재산범죄 피해 발생 추이

	형법범죄 노인피해 자	인구대비 형법범죄 노인피해 자*	재산범죄 노인피해 자(A)	재산범죄 구성비	인구대비 재산범죄 노인피해 자*	여성 노인 피해자(B)	성비(B/A)
1999	17,182	372	8,810	51.3	191	2,268	25.7
2000	20,153	417	10,469	51.9	217	2,855	27.3
2001	21,924	435	11,187	51.0	222	3,080	27.5
2002	22,259	423	11,983	53.8	228	3,233	27.0
2003	25,265	459	14,083	55.7	256	4,267	30.3
2004	41,782	730	24,844	59.5	434	7,805	31.4
2005	46,340	783	27,249	58.8	460	8,545	31.4
2006	51,056	835	30,740	60.2	503	9,268	30.1
2007	55,635	880	33,550	60.3	531	10,322	30.8
2008	65,173	927	40,952	62.8	583	12,611	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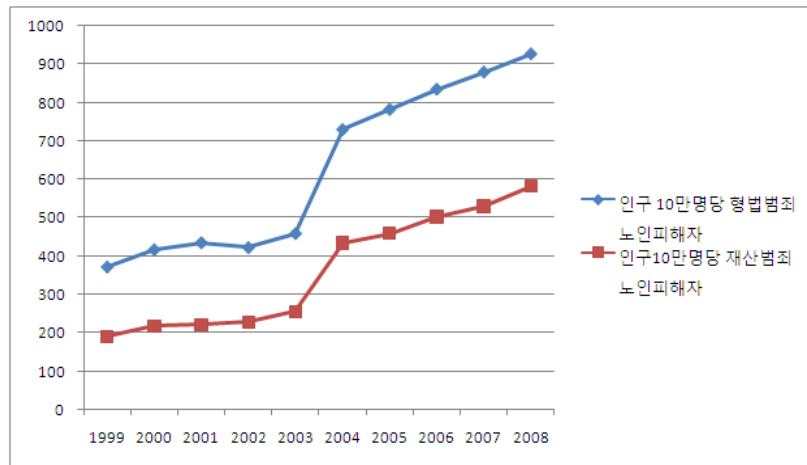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2000-2009)

*인구10만명당 각 범죄피해자수임.

주1)1999-2001년 형법범 노인피해자 통계는 2002년 이후 통계 기준에 따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 피해자를 포함한 수치임. 원 수치는 1999년 13,690명, 2000년 16,155명, 2001년 17,107명임.

지난 10년 동안 재산범죄 노인 피해자가 전체 형법범죄 노인피해자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절반 이상이다. 지난 1999년 전체 형법범죄 노인피해자 17,182명 가운데 재산범죄 피해자는 8,810명으로서 재산범죄 구성비는 51.3% 정도였는데, 이후 점점 높아져서 2008년에는 전체 형법범죄 노인피해자 65,173명 가운데 40,952명이 재산범죄 피해자로서 그 구성비는 62.8%에 이르고 있다. 전체 형법범죄 노인피해자 가운데 재산범죄 노인피해자의 비중은 최근에 이를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림 5> 인구 10만명당 재산범죄 노인피해자 발생 추이



<그림5>는 지난 10년 동안 인구 10만명당 형법범죄 노인피해자와 재산범죄 노인 피해자 발생 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형법범죄 노인피해자 증가추이는 재산범죄 노인피해자 증가 추이와 비슷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형법범죄 피해에서 재산범죄 피해의 비중이 높은데 따른 것이

다. 노인 형법범죄 피해 대책이 재산범죄 피해 대책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할 것을 시사한다.

재산범죄 피해 노인은 성별로 구분해 볼 때, 남성 노인의 비율이 높다. 지난 1999년 재산범죄 노인피해자에서 남성의 비율은 74.3%이었는데, 최근에는 69.2%를 나타내고 있다. 여전히 남성 노인피해자의 비율이 높지만, 여성 노인피해자의 비율도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표 5> 재산범죄 유형별 노인피해자 발생 추이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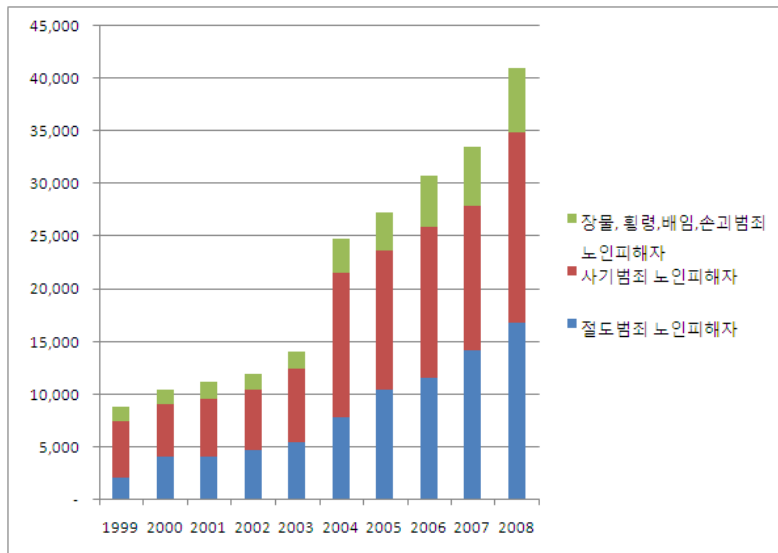
	재산범죄 노인피해 자(A)	절도범죄 노인피해 자(B)	B/A(%)	사기범죄 노인피해 자(C)	C/A(%)	장물, 횡령,배임, 손괴범죄 노인피해 자(D)	D/A(%)
1999	8,810	2,142	24.3	5,351	60.7	1,317	14.9
2000	10,469	4,070	38.9	4,992	47.7	1,407	13.4
2001	11,187	4,103	36.7	5,526	49.4	1,558	13.9
2002	11,983	4,795	40.0	5,721	47.7	1,467	12.2
2003	14,083	5,443	38.6	6,971	49.5	1,669	11.9
2004	24,844	7,808	31.4	13,777	55.5	3,259	13.1
2005	27,249	10,500	38.5	13,218	48.5	3,531	13.0
2006	30,740	11,561	37.6	14,316	46.6	4,863	15.8
2007	33,550	14,173	42.2	13,784	41.1	5,593	16.7
2008	40,952	16,795	41.0	18,078	44.1	6,079	14.8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2000-2009)

재산범죄 노인피해자의 대다수는 절도범죄와 사기범죄 피해자이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 발생한 재산범죄 노인피해자 가운데 절도범죄와 사기범죄 피해자의 합계는 평균 86%를 차지한다. 절도와 사기범죄를 제외한 장물, 횡령, 배임, 손괴 범죄 피해자의 합계가 나머지를 차지한다. 절도범죄와 사기범죄 노인 피해자 발생빈도를 비교해 볼

때, 지난 2007년을 제외하고는 사기범죄 피해의 발생빈도가 더욱 높았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08년의 경우 전체 재산범죄 노인피해자는 40,952명, 절도범죄 피해자는 16,795명(41.0%), 사기범죄 피해자는 18,078명(44.1%), 기타 장물, 횡령, 배임, 손괴범죄 피해자가 6,079명(14.8%)이다.

<그림 6> 절도·사기·기타범죄 노인피해자 비율



5. 노인 절도·사기범죄 피해 추이

<표 6> 절도범죄 노인 피해자 발생 추이

	절도범죄 피해자	인구대비 절도범죄 피해자*	절도범죄 노인 피해자 (A)	인구대비 절도범죄 노인 피해자*	절도범죄 노인 남성 피해 자	인구대비 절도범죄 노인 남성 피해 자*	절도범죄 노인여성 피해자 (B)	인구대비 절도범죄 노인여성 피해자*	성비 B/A(%)
1999	51,573	111	2,142	46	1,544	82	598	22	27.9
2000	99,475	212	4,070	84	2,881	146	1,189	42	29.2
2001	101,776	215	4,103	81	2,831	137	1,272	43	31.0
2002	104,428	219	4,795	91	3,265	150	1,530	49	31.9
2003	118,999	249	5,443	99	3,601	158	1,842	57	33.8
2004	139,953	291	7,808	136	5,064	213	2,744	82	35.1
2005	179,369	373	10,500	177	6,982	283	3,518	102	33.5
2006	181,763	376	11,561	189	7,760	303	3,801	107	32.9
2007	203,964	421	14,173	224	9,435	355	4,738	129	33.4
2008	213,772	440	16,795	256	11,107	400	5,688	150	33.9
1999년 기준 증가율 평균	170.5		279.9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2000-2009)

*인구10만명당 각 범죄피해자수임.

지난 10년 동안(1999~2008년) 우리나라에서 절도범죄 피해자 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1999년 절도범죄 피해자수는 모두 51,573명이었는데, 지난 2008년에는 213,772명이 절도범죄 피해를 입었다. 이 기간 동안 절도범죄 피해자수는 4.1배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10년 동안 절도범죄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절도범죄 노인피해자 수의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지난 1999년 절도범죄 노인피해자는 모두 2,142명이었는데, 지난 2008년에는 16,795명으로 늘어났다. 이 기간 동안 절도범죄 노인피해자수는 무려 7.8배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절도범죄 피해자수의 증가세도 주목할 만하지만, 특별히 노인피해자의 증가세는 더욱 뚜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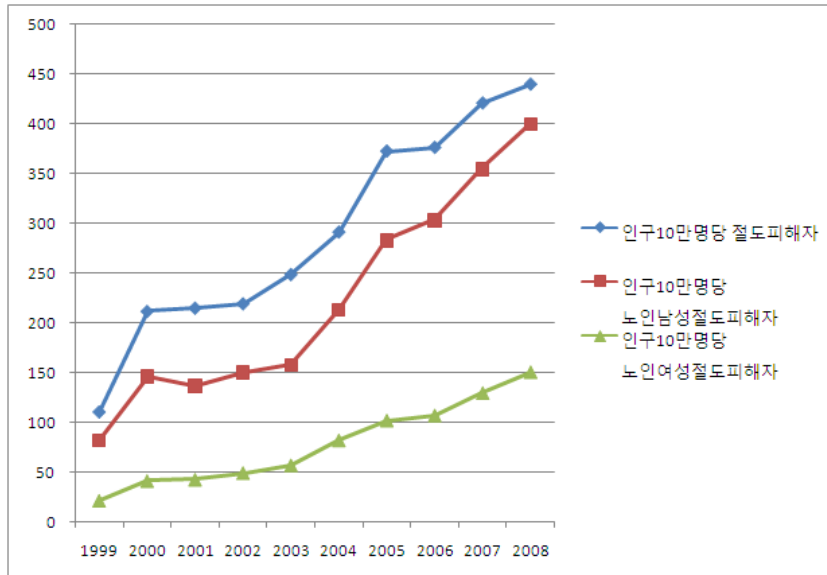
우리나라 절도범죄 노인피해자수의 증가 추세는 1999년을 기준으로 피해자 수 증가율 평균값을 비교해 보아도 확인된다. 이 기간 동안 전체 절도범죄 피해자 증가율 평균은 170.5%인데, 절도범죄 노인피해자의 증가율 평균은 279.9%에 이른다.

노인 절도범죄 피해자 수가 크게 늘어난 데에는 고령화 추세 속에서 노인인구의 증가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노인 인구의 증가 요인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 인구 10만명당 범죄 피해자 수를 산출해 보면, 전체 절도범죄 피해자는 지난 1999년 111명에서 2008년 440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절도범죄 노인 피해자는 1999년 46명에서 2008년 256명으로 5.6배 증가한 셈이 된다. 인구 10만명당 범죄피해자 발생빈도로 살펴볼 때에도 노인피해자의 증가세는 확인된다.

절도범죄 노인피해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노인의 범죄 피해가 크게 높다. 지난 10년 동안(1999-2008년) 절도범죄 노인피해자 중에서 남성노인 피해자의 비율은 65%~72%를 차지한다. 지난 10년 동안 절도범죄 노인피해자 10명 중 7명은 남성노인 피해자였던 셈이다.

노인 성별로 볼 때, 남성노인의 절도범죄 피해가 상대적으로 높는데, 인구 10만명당 남성노인의 절도범죄 피해자수는 전체 절도범죄 피해자수에 거의 육박한다. 지난 1999년 인구10만명당 절도범죄 피해자수는 111명이었는데, 남성노인 절도범죄 피해자수는 82명으로서 74.5% 수준을 보였으나, 2006년에는 80.5%, 2008년에는 90.8% 수준에 이른다. 남성노인의 절도범죄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최근에는 인구대비로 볼 때, 전체 절도범죄 피해자수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 <그림>은 인구 대비 성별 절도범죄 피해자 수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7> 인구 대비 성별 절도범죄 피해자수 추이



<표 7> 사기범죄 노인피해자 발생 추이

연도	사기범죄 피해자	인구대비 사기범죄 피해자	사기범죄 노인피해자(A)	인구대비 사기범죄 노인피해자	사기범죄 노인남성 피해자	인구대비 사기범죄 노인남성 피해자	사기범죄 노인여성 피해자(B)	인구대비 사기범죄 노인여성 피해자	성비 B/A(%)
1999	111,006	238	5,351	116	3,956	211	1,395	51	26.1
2000	91,432	195	4,992	103	3,596	183	1,396	49	28.0
2001	97,411	206	5,526	110	4,039	195	1,487	50	26.9
2002	102,825	216	5,721	109	4,291	198	1,430	46	25.0
2003	136,479	285	6,971	127	4,922	216	2,049	64	29.4
2004	202,318	421	13,777	241	9,365	394	4,412	132	32.0
2005	172,868	359	13,218	223	8,948	363	4,270	124	32.3
2006	176,469	365	14,316	234	9,935	388	4,381	123	30.6
2007	164,517	340	13,784	218	9,486	357	4,298	117	31.2
2008	179,584	369	18,078	275	12,548	452	5,530	146	30.6
1999년 기준 증가율 평균	29.3		90.1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2000-2009)

*인구10만명당 각 범죄피해자수임.

사기범죄는 재산범죄 유형 가운데 노인피해자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범죄 유형이다. 사기범죄 피해자 발생 추이는 지난 10년 동안(1999~2008년) 증감을 반복하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발생 빈도로 볼 때, 2004년에 피해자 증가가 주목을 끈다. 사기범죄 노인 피해자 역시 2004년에 크게 늘어났다. 지난 10년 동안(1999~2008년) 사기범죄 피해자수는 지난 1999년 111,006명에서 2008년 179,584명으로 1.6배 늘어난 반면, 사기범죄 노인피해자수는 1999년 5,351명에서 2008년 18,078명으로 3.4배 늘어났다. 인구대비 사기범죄 피해자수로 보면, 1999년 인구 10만명당 사기범죄 피해자수는 238명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369명으로 1.6배 증가했다. 이와 비교해서 인구대비 사기범죄 노인피해자수를 살펴보면, 1999년 인구 10만명당 사기범죄 노인피해자수는 116명이었는데, 2008년에는 275명으로 2.4배 늘어났다. 지난 1999년과 2008년 두 시기 사기범죄 피해자 발생을 비교해 볼 때, 사기 범죄 피해는 최근에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노인피해자의 증가폭은 더욱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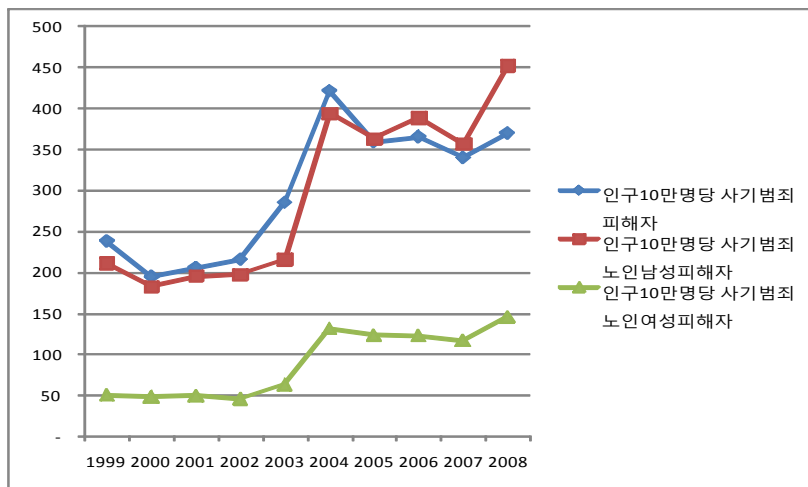
1999년을 기준으로 사기범죄 피해 증가율 평균을 산출해 볼 때에도 노인들의 사기피해 증가율은 더욱 높게 나타난다. 1999년 기준 사기범죄피해 증가율 평균은 29.3%인데 비해, 사기범죄 노인피해 증가율은 90.1%로 더욱 높게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사기범죄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들의 사기범죄 피해는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절도범죄 피해와 마찬가지로 사기범죄에 있어서도 노인피해자의 대다수는 남성이다. 사기범죄 노인 피해자의 성비를 산출해 보면, 이 시기 동안 노인 남성의 비율은 68%~75%에 이른다. 절도범죄 피해와 마찬가지로 사기범죄 피해에서도 피해 노인 10명 중 7명 정도는 노인 남성인 셈이다.

노인 성별로 인구 10만명당 사기범죄 노인 피해자수를 산출해 보면,

노인 남성 피해자수가 여성에 비해서 크게 높은데, 지난 2005년부터 인구 10만명당 전체 사기범죄 피해자수를 증가한다. 지난 2005년 이후 노인 남성의 사기범죄 피해가 전체 평균보다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8> 인구대비 성별 사기범죄 노인 피해자 발생 추이



위 <그림 8>에서 나타나듯이 노인 남성의 인구10만명당 사기범죄 피해자수는 전체 사기범죄 피해자수와 거의 비슷한데, 지난 2005년부터는 오히려 전체 사기범죄 피해자수를 증가하여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난 2008년에 우리나라에서 사기범죄 피해자는 인구 10만명당 369명인데, 사기범죄 피해를 입은 노인 남성의 숫자는 452명에 이른다. 노인 남성과 비교하면 노인 여성의 사기범죄 피해는 상대적으로 낮아서 지난 2008년 사기범죄 피해를 입은 노인 여성은 인구 10만명당 146명 수준이다.

6. 요약

공식범죄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1999-2008년) 우리나라 전체 범죄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범죄피해자 수는 1999년 1,449명에서 2008년 2,506명으로 1.72배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인구 10만명당 노인범죄피해자수도 1999년 750명에서 2008년 1,573명으로 2.1배 증가했다. 인구대비 범죄피해자 발생수로 볼 때, 노인 연령층은 전체보다 다소 낮지만, 범죄피해자수 증가율로 보면 더욱 높다.

지난 10년 동안 노인 여성 범죄피해자 규모는 노인 남성의 28~37% 수준을 차지해 왔는데, 그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노인 여성의 범죄피해 발생 건수는 노인 남성과 비교해서 절대적으로 낮지만, 그 간격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지난 10년 동안 형법 범죄 피해를 입은 노인들의 숫자도 크게 늘어났다. 인구 10만명당 전체 형법범죄 피해자수는 1999년 539명에서 2008년 1,639명으로 3.0배 증가하였는데, 인구 10만명당 형법범죄 노인피해자수는 1999년 296명에서 2008년 927명으로 3.1배 증가했다. 그러나 인구 10만명당 형법범죄 피해자에서 노인피해자의 비율(인구10만명당 노인비)은 55~58%에서 일정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전체 형법범죄 피해자에서 노인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중에서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형법범죄 유형별로 볼 때, 노인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유형은 재산범죄이고, 그 다음은 강력범죄(폭력)이다. 전체 형법범죄 노인피해자에서 재산범죄 노인피해자가 차지하는 구성비로 보면, 재산범죄 노인피해자의 증가가 눈에 띈다. 1999년 노인 재산범죄 피해자는 전체 노인형법범죄 피해자의 51.3%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2008년에는 62.8%

로 점점 그 구성비가 높아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강력범죄(폭력) 노인피해자의 구성비는 1999년 34.2%에서 2008년에는 23.%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다. 인구 10만명당 각 형법범죄 유형별 범죄 피해자 발생 추이를 산출해 보면, 재산범죄는 지난10년 동안 범죄피해자 증가 추세가 확연하지만, 강력범죄(폭력)의 경우에는 지난 2005년 이후 정체 상태를 나타낸다. 지난 10년 동안 형법범죄 노인피해자의 증가는 사실상 재산범죄 피해자의 증가로 해석할 수 있다. 노인 형법범죄 피해 대책은 재산범죄 피해 대책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재산범죄 노인피해자의 대다수는 절도범죄와 사기범죄 피해자이다.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재산범죄 노인피해자 가운데 절도범죄와 사기범죄 피해자의 합계는 평균 86%를 차지한다.

지난 10년 동안 절도범죄 피해자 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인구 10만명당 범죄 피해자 수를 산출해 보면, 전체 절도범죄 피해자는 지난 1999년 111명에서 2008년 440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절도범죄 노인 피해자는 1999년 46명에서 2008년 256명으로 5.6배 증가하였다.

절도범죄 노인피해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노인의 범죄 피해가 크게 높다. 지난 10년 동안(1999-2008년) 절도범죄 노인피해자 중에서 남성노인 피해자의 비율은 65%~72%를 차지한다. 지난 10년 동안 절도범죄 노인피해자 10명 중 7명은 남성노인 피해자였던 셈이다. 인구 10만명당 남성노인의 절도범죄 피해자수는 전체 절도범죄 피해자수에 거의 육박한다. 지난 1999년 74.5% 수준을 보였으나, 2008년에는 90.8% 수준에 이른다.

사기범죄는 재산범죄 유형 가운데 노인피해자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범죄 유형이다. 인구 10만명당 사기범죄 피해자수는 1999년 238명에서 2008년 369명으로 1.6배 증가했다. 반면, 인구 10만명당 사기범죄 노인 피해자수는 1999년 116명에서 2008년에는 275명으로 2.4배 증가했다. 전체 사기 범죄 피해는 최근에 더욱 커지고 있는데, 노인피해자의 증가

폭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절도범죄 피해와 마찬가지로 사기범죄에 있어서도 노인피해자의 대다수는 남성이다. 지난 10년 동안 사기범죄 노인피해자 가운데 노인 남성의 비율은 68%~75%에 이른다.

노인 성별로 인구 10만명당 사기범죄 노인 피해자수를 보면, 노인 남성 피해자수가 여성에 비해서 크게 높은데, 지난 2005년 이후부터는 전체 사기범죄 피해자수를 능가한다. 노인 남성의 사기범죄 피해가 심각한 것을 보여준다.

IV. 노인 범죄피해 예방대책 제언

우리 사회에서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은, 그나마 충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사회복지적 차원의 보호와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인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빈곤과 질병으로부터의 보호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인들에 대한 관심은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치안서비스 차원으로도 확대되어야 할 상황에 이르고 있다. 노인들의 범죄 피해, 특별히 절도와 사기 등의 재산범죄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들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여기에서는 노인 범죄 피해 유형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기범죄 및 절도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중심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1. 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노인 사기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이다. 사기범죄의 특성상 사기범죄 유형과 사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일정부분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의 경우, 사기 유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노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노인들이 전화금융사기 형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사기범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 교육 활동이 요구된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피해 예방 교육은 적극적으로 보호대상자들을 찾아가는 맞춤형 예방교육이 요구된다. 노인들의 경우 신체적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 지리에 밝지 못하다는 점, 청장년과 비교해서 교육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들을 찾아가서 예방교육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공원주변 등이 예방교육을 위한 장소로서 적절할 것이다.

노인 범죄 피해 실태에 관한 연구조사들에서는 노인 범죄피해의 경우 범죄피해 신고율이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서 더욱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노인 연령층의 사회적 특성에서 노인들은 자신들의 범죄 피해 사실을 알림으로써 지원을 받기 보다는 비웃음을 살 것이라는 우려에서 범죄 피해 사실을 숨기는 사례가 더욱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범죄피해 노인들을 찾아가는 치안서비스가 필요하다. 경찰에서의 정기적인 독거노인 방문 활동 외에도 노인들이 자주 모이는 복지관, 경로당, 공원 등을 찾아가서 범죄 피해 여부를 확인하거나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회교육의 확대도 간접적으로 노인 범죄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노인 사기범죄 피해는 각종 정보 습득 통로가 단절되고 관련 정보를 습득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다. 정부 차원에서 정보 습득 통로를 넓혀주기 위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교육을 확대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인터넷 교육기회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2. 노인 소비자 지원 민간 네트워크와 협력관계 구축

노인 사기범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는 경찰의 범죄예방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의 노인 소비자 보호망이 요구된다. 노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는 일반 소비자 보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노인 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연계하여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 소비자 보호 네트워크에 경찰이 업저버 형태로 참여하여 민관이 협력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노인복지 관련 단체, 소비자 관련 단체,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내각부 국민생활국 등 정부관계자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경찰청, 지방소비생활센터 관계자들이 업저버로 참여하여 구성된 ‘고령자 보살핌 네트워크 연락 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노인 소비자를 지원하는 민간 네트워크에 경찰이 참여함으로써 노인 사기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범죄 피해 신고율 제고 노력

선행연구들에서는 노인 범죄피해 신고율이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두 건의 노인범죄피해 조사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는

데, 이건종·전영실(1995)의 조사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노인이 피해사실을 신고한 비율은 30.3%, 장준외 외(2008)의 조사에서는 34.4%로 조사된 바 있다. 장준오 외(2008)의 조사에서는 특별히 사기피해를 입은 노인의 신고율은 24.4%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노인들이 소비자 상담을 하는 건수도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노인 소비자 상담건수는 전체의 소비자 상담건수의 2.0%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²⁴⁾ 2005년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이 9.1% 수준인 점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노인 소비자의 피해 상담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노인 연령층의 사기범죄 피해 신고율, 소비자 피해 신고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인들의 사기범죄 피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노인들이 피해 사실을 제대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도 사기범죄 피해를 입은 노인들이 경찰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서 사기범죄 피해를 일정 정도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범죄 피해를 신고하지 않는 노인들이 많다는 점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피해 신고 홍보 활동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노인 사기범죄 피해 관련 법률안 개정

노인 사기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개정도 요구된

24) 송순영, 고령소비자 피해구제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2006, 12면.

다.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의 주요 유형은 효도관광 판매사기, 건강 식품이나 보조의료기구 판매사기, 전화판매사기, 보이스 피싱 등이다. 이러한 노인 사기범죄를 규제하는 법안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 있으나, 이 법안과 유사한 일본의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방문판매법은 노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지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부실 고지하거나 사실을 불고지한 것을 명백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판매자의 부실고지로 사실을 오인한 경우 계약의 신청 또는 승락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소비자가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이 규정에 근거해서 청약 철회를 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들을 사기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의 마련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노인 사기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²⁵⁾

V. 결론

25) 지난 2009년 12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속임수를 써서 노인을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로서 개선 가능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에 밀려 상정되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는 전체 사기 피해자 중에서 노인의 경우만 따로 떼어 법률을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법률안 마련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오늘날 노인들의 사회활동은 과거와 비교해서 더욱 확대되고 있다. 날로 발달하는 의료 기술과 복지차원의 의료서비스의 확대로 노후에도 건강을 누리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만큼 노인들의 사회활동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는 노인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 생활양식노출이론은 개인이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더 할수록 범죄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범죄피해 유형 중에서 특별히 사기범죄 피해는 심각하다.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 소비자와 비교해서 소비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나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판매방식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뒤떨어지는 취약한 소비자층이다. 노인들의 이러한 소비자로서의 특성은 날로 교묘해져가는 판매사기 상술에 피해자가 되기 쉬운 조건이 되고 있다.

공식범죄통계는 지난 10년 동안 전체 범죄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 범죄피해자들이 더욱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특별히 노인 남성들의 사기범죄 피해는 언론을 통해서 그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는 공식범죄통계에 파악된 범죄피해 추이만을 살폈다. 노인 범죄피해는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더욱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범죄피해를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노인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곽대경 외, 현대사회와 범죄, 청목출판사, 2007.
- 구자숙·이현희·원영희·전영실, 노인의 범죄피해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김근홍, “노인문제와 노년학”, 김근홍 외, 『한국의 사회문제』, 도서출판 양지, 2002.
- 김근홍, 『한·독 노인복지 이해』, 학문사, 1999.
- 김은경·최수형·박정선,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 김인숙, “노인범죄에 관한 이론”, 국민대 『사회과학연구』, 11, 1998.
- 김지선·박미숙·김지영·홍영오,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 김태현, 『노인학』, 교문사, 2007.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9-2008.
- 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제8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 박순진·최영신,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 이건중·전영실, 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 장준오, 노인범죄와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연구, 형사정책연구, 제 20권 제1호, 2009.
- 장준오, 세계범죄피해조사:한국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장준오·유홍준·정태인·이완수·노용준,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와 노인환경의 유해성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 정태인 외, 『사회문제』, 그린, 2008.
- 최인섭·기광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 최인섭·김지선·황지태,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최인섭·박순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결과, 2002.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V), 2006.
- 한동효, 고령화 사회의 노인범죄 유형별 추이와 범죄유발 요인에 관한 연구, 2008.
- 허경미, 노인의 범죄피해 특징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7호, 2004.
- 허경미, 도시노인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2006.
- Letitia T, Alston, Crime and Older Americans, Charles C, Thomas Publishers, 1986, vi.

책임연구보고서 2010-06

노인 범죄피해 추이분석과 대책

- 공식범죄 통계를 중심으로 -

2010년 9월 30일 발행

발행인 : 이 중 우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1길 29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